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명광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02-723-5302

피청구인 : 행정안전부 장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 정보 공개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

처분일 : 2012. 6. 18일

(접수번호 1719436 접수일 2012. 6. 7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처분)

행정심판절차의 고지유무 : 예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2. 6. 18. 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위 제1항의 비공개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12. 6. 7일 정보공개청구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위)의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갑 1호 증 참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2012. 6. 18일 받았 습니다.

2. 비공개 결정 통지(갑 2호 증 참고)에서 행정안전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다 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보의 공개나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된 것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같은 법 어디에도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 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결정·통보할 권한만 있을 뿐이며 정보공개여부를 결 정할 권한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라고 하여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따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제3 호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며 정보공개법 상 의 공공기관에 주식백지신탁위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 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도별 심사현황(직무관련성 있음, 없음 등)을 청 구인이 제시한 첨부양식대로 행정부는 정부조직도에 의한 소구분을 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별로 소구분을 하여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 19조 제5항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의7 제4항에서 심사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 이유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라며 연도별 심

사 현황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사유 결정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령의 취지와 법원의 기존 판례에 반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3. 먼저 첫 번째 비공개 사유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따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대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한 바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개될 때의 공익과 비공개했을 이익을 비교해 비공개의 공익이 큰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공직자윤리법 10조 1항 내지 3항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의무적 공개(관보게재 등)의 근거조항이지, 그 외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직무관련 정보의 비공개 근거는 아니라는 점, (2)주식의 매각이나 신탁에 대해 세부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은 비밀/비공개에 관하여는 특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점, (3)공직자윤리법 14조 5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시행령 규정 또한 심사위원회에서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정보의 비공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본다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마땅히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 봅니다.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 상의 공공기관에 주식백지신탁위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 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공직자 보유 주식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라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이러함에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곳은 주식백지신탁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위가 해당 사무국이 없는 자문위의 성격임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통계의 공개가 어떻게 공정성을 훼손하는지를 합리적으로 밝혔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국회의 정기 국정 감사시 제출되고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또 예전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갑 3호 중 참고). 이러한 자료 게시 후, 주식백지신탁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인터넷 게시 자료와 조금 다른 점은,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법부/기타로 나누어 공개되고 있는 구분으로는 각 행정기관별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행정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개해달라는 단순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듯 세부적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리는 만무합니다.

5. 청구인의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윤리 향상 및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백지신탁위의 설치 목적과도 부합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백서나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하여 스스로의 존재의 당위를 홍보하여야 할 자료인 것입니다.

다음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구하는 2012. 6. 7일 정보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 다 음 -

첨부양식과 같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각 연도별로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

*첨부양식(편의를 위해 붙임)

연도구분

2005년 - 2005. 11. 19부터 2006. 3. 31

이후 해당 연 4.1부터 이후 연도 3. 31까지

(ex. 2006년 - 2006. 4. 1~2007. 3. 31)

0000년 주식소유 심사 현황 양식

구 분	소구분	접수	심 사 결 과				계류중
			소계	직무관련 있음	직무관련 없음	각하, 철회	
국회							
행정부	실/위원회.원/부/처/청 등 당시 정부조직도에 의한 소구분						
지자체	광역단체별 소구분						
대법원등							

입 증 방 법

첨 부

1. 갑 1호 증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2. 갑 2호 증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
3. 갑 3호 증 2006-04-2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설명자료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비공개 결정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2. 6. 20

청구인 명 광 복

1. 갑 1호 증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1719436	접수일	2012.06.07
------	---------	-----	------------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명 광 복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	
	주소(소재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사업자(법인 · 단체) 등록번호	-
	전화번호	02-723-5302	팩 스	(--)	전자우편주소	elle@pspd.org
정보 내용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한 현황을 첨부 양식(참조문서)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공개 형태	전자파일
수령 방법	정보통신망

수수료	감면 여부	해당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2 년 06 월 07 일

명 광 복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유의사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 번호	1719436	청구인 성명	명 광 복
접수 부서	운영지원과	접수자 성명	행안부 기관운영자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2012 년 06 월 07 일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연도구분

2005년 - 2005. 11. 19부터 2006. 3. 31

이후 해당 연 4.1부터 이후 연도 3. 31까지

(ex. 2006년 - 2006. 4. 1~2007. 3. 31)

000년 주식소유 심사 현황 양식

구 분	소구분	접수	심 사 결 과				계류중
			소계	직무관련 있음	직무관련 없음	각하, 철회	
국회							
행정부	실/위원회.원/부/처/청 등 당시 정부조직도에 의한 소구분						
지자체	광역단체별 소구분						
대법원 등							

2. 갑 2호 증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110-043)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명광복

접수 일자	2012.06.07	접수 번호	1719436
-------	------------	-------	---------

청구 내용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한 현황을 첨부 양식(참조문서)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	--	--

공개 일시	2012.06.18 16 시	공개 장소	
-------	-----------------	-------	--

공개 내용			
-------	--	--	--

공개 방법	공개 형태		
	교부 방법		

납부 방법	수수료	우송료	감면액	합계
	0원	0원	0원	0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 (입금시)	[]
----------	--	-------------------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1. 청구인 귀하 및 귀 소속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12.6.7. 제출하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71943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2.4.1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671322)를 요청하셨고, 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거나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귀하는 2012.5.17. 이의신청(접수번호 1671322)을 제기하였고 2012.5.24. 정부공개심의회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각결정(기각3, 인용1, 부분인용2, 불참1) 되었는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피청구인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보내용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직무관련성 심사현황(첨부양식)으로 변경하여 청구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는 심사위원회가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므로 심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변경 지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정보의 공개나 비공개에 관하여 규정된 것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같은 법 어디에도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결정·통보할 권한만 있을 뿐이며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도별 심사현황(직무관련성 있음, 없음 등)을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양식대로 행정부는 정부조직도에 의한 소구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별로 소구분을 하여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의7 제4항에서 심사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 이유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까.
----------------------	--

	5.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이효식 사무관에게 전화(02-2100-3355)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12 년 06 월 18 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기안자	이효식	직위/직급	행정사무관
검토자	정연명	직위/직급	복무담당관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이경옥	직위/직급	부위원장
시행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71(2012.06.18)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세종로) 1207호		
전화	02-2100-3355 (팩스:)	전자우편	lhs92895@korea.kr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갑 3호 증 2006-04-2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설명자료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처리상황>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설 명 자 료	작성과	공직윤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병훈
			k102604@mogaha.go.kr
		연락처	2100-3355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처리상황

-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시행에 따라 '05.11.19부터 해당 공직자들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받아 처리하여 왔음.

- '06.3.31까지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건은 574건으로서 국회(국회의원 포함)62건, 행정부 107건, 지방자치단체 386건,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19건이었음.

- 심사청구된 574건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06.3.31까지 6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529건을 처리하고, 45건은 검토 중인 바, 처리된 529건중 161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345건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식백지신탁대상이 아닌 23건은 해당 공직자가 철회하거나 위원회에서의 각하 처리하였음.

- ※ 붙임 : 1. 심사청구 및 처리현황
2. 주식백지신탁제 개요

<심사청구 및 처리현황>

('06.3.31 현재)

구 분	접 수	심 사 결 과				계류중
		소 계	직무관련 있음	직무관련 없음	각하,철회	
계	574	529 (100%)	161 (30.4%)	345 (65.2%)	23 (4.4%)	45
국 회 (국회의원)	62 (54)	61 (53)	25 (22)	33 (28)	3 (3)	1 (1)
행 정 부	107	95	19	71	5	12
지 자 체	386	356	117	224	15	30
대법원등	19	17	-	17		2

주식백지신탁제 개요

I. 목 적

-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토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II. 추진경과

- '04. 4월 : 제17대 총선시 여·야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
- '04. 9. 22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4.12.2/12.17 : 국회 행자위 대체토론/공청회 개최
- '05. 2. 23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정대안 마련
 - 백지신탁 적용대상에 재경부·금감위 소속직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지신탁대상 하한가액 조정 (3천만원~1억원 → 1천만원~5천만원)
- '05. 4. 26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5. 5. 18 : 개정 공직자윤리법 공포('05.11.19 시행)

Ⅲ. 주식백지신탁제 주요내용

- 재산공개대상자 및 재정부·금감위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정부 금융정책국 및 금감위 4급이상)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함.
 -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
 - 60일이내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분기간 연장(1회 30일이내) 가능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
- 매각 또는 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3천만원)
-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국회·대법원장 각 3인추천)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수탁회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도 수탁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 신탁대상자의 신탁거부, 신탁재산 관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